우리농업, 농촌 이렇게 가야합니다

(續)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지속적 추진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량 농지를 묶어서 집단화하여 그곳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꾀함으로써 농업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Ⅳ 농업진흥지역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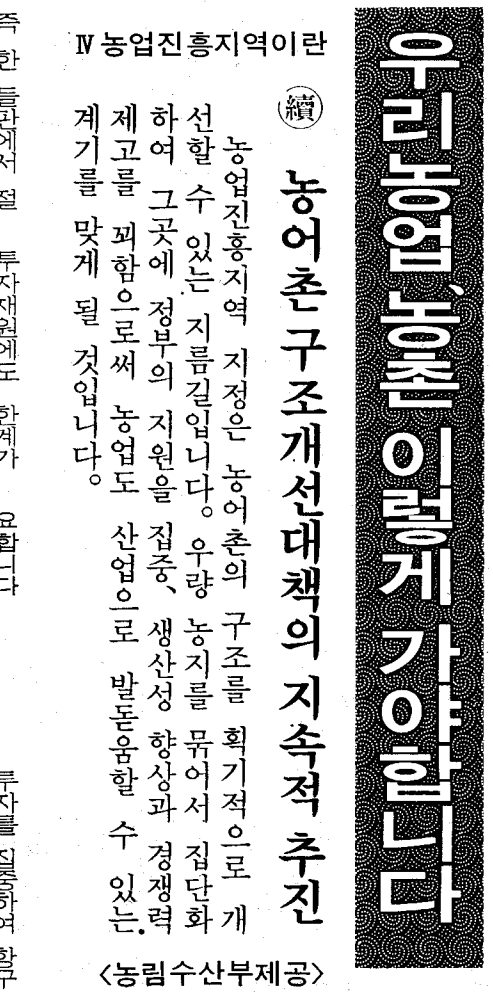

〈농림수산부제공〉

즉 한 틀판에서 절대농지로 지정된 필지만 골라서 경지정리나 농업용수등 기반투자를 해줄 수도 없고, 또 애서 투자를 해놓아도 농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버린다면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현재의 절대농지 제도는 정부의 투자나 각종 농업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60년대, 70년대초의 「쌀부족시대」에 농지를 지킨다는 목표아래 전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관계로 그동안 농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절대농지제도가 우리나라의 쌀자급에 큰 공헌을 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는 여건이 변하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백10만정보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백10만정보의 농경지 전체를 모두 정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에는 우선 정비가 불가능한 농경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에도 한계가 있고,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2백10만정보의 농경지중에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선정하여 앞으로 약10년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 농업국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를 잘 정비하여 대형기계화에 의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용배수시설을 완전 정비하여 일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본집약적이고 자동화된 시설영농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앞으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서의 농업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3, 농업의 항구적인 생산기지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60년대부터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공업위주로 경제를 성장시켜 국가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 90년에는 5천불을 넘어 앞서가는 중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목표인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7개국 미국·영국·프랑스·서독·캐나다·이탈리아·일본(G-7)의 농업현황, 특히 주요식량의 곡물자급율을 보면, 일본만 30%로서 우리보다 낮은 수준(그러나 일본은 기술수준이 세계적 수준임)이고, 나머지 6개 선진국은 80% 이상의 자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진국은 농업에서도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공업위주의 성장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농업을 발전시켜 국가를 균형되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집단화단 우량농지를 잘 보전하고 기반투자를 집중하여 항구적인 농업생산기지로 만드는 일은 국가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즉 새로운 국가목표인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도 선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항구적인 농업생산기지의 건설을 위한 진흥지역 지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4, 기계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간계곡에 있는 논이나 도시 근교에 있는 논밭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땅을 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평야지에 있는 논밭이라 하더라도 농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기계로 농사를 짓고자 하여도 지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바로 이러한 농지를 잘 정비하여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촌도 해마다 모내기철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도 없을 것이며, 농민들도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5%가 임야로 되어 있으며, 농지는 국토면적의 21%인 2백10만 정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정된 농지면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식량생산의 본격적 기지가 될 우량농지는 잘 가꾸고 보전해 나가도록 하되, 그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자급적 영농을 유지하는 한편, 축사, 버섯재배사, 양어장등 농어가 소득에 보탬이 될 농어업용 시설을 보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를 공장이나 택지등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부터 전용해 나가도록 하여야 자원의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바

6, 경지지역과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내에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내의 농지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효율적인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도시발전이나 공단개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는 진흥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진흥지역에는 각종농업투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금년말까지 지정키로 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현재의 절대농지 제도가 자동폐지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법률체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6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4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46조 (용도구역의 지정요건 등)
41조	(〃 지정대상)	제47조 (진흥지역의 지정승인요청)
42조	(〃 지정절차)	제48조 (진흥지역 등의 고시)
43조	(〃 변경)	제49조 (진흥지역 등의 변경)
44조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50조 (진흥구역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
45조	(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제51조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52조 (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
부칙		부칙
제6조	(절대농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진흥지역의 지정기한)

連載 栽培教室

93신규회원을 위하여…

하반(夏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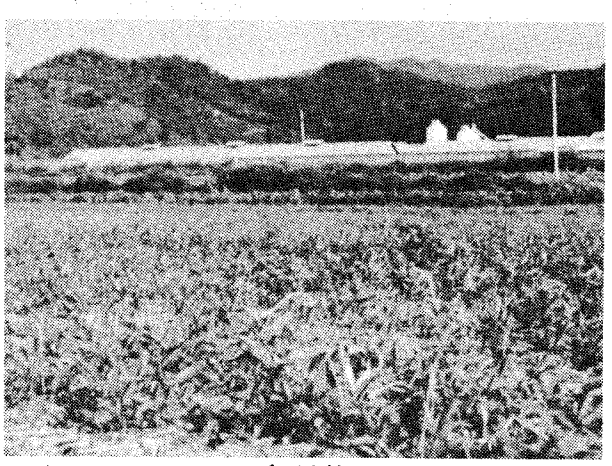

◇ 植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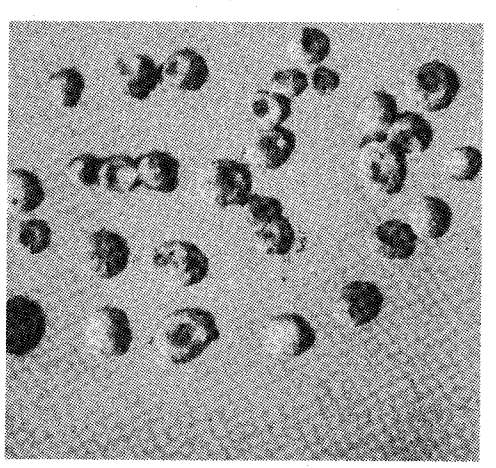

◇ 藥材

1, 학명 :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2, 과명 : 천남성과 Araccae

3, 성분 : 정유, 지방유, 당, Ca, Mg을 함유.

4, 용도 : 진구, 임신구토, 급성위카타르, 진해, 거담

5, 약용부위 : 괴근(塊根)

6, 재배법

가, 적지

○기후 : 우리나라 전역에 재배가능하며 농가에서 잘조로 없애는데 힘들정도로 초성이 강한 식물이다(중리지 않고 잘되며 개간지 산기슭밭, 개간지등에서 재배가 좋으며 이상적인 토양은 배수가 좋고 적습하며 유기질이 많은 비옥한 사질양토이면서 표토밑에 작은 자갈이나 단단한 땅이 발쳐 있는 곳이 좋다.

나, 품종 : 단일품종(국내산) (대반하는 생약성분이 낮다)

다, 번식 : 근경으로 한다. (종구로 식재하고 번식한다)

라, 재배요점

○정식시기 : 봄 3월하순, 가을 10월상순(월동을 제외한 년중 식재가 가능함)

○식재거리 : 골과 골사이 25~30㎝ 간격으로 주간 6~10㎝로 식재한다. 3백평(10a)당 종근은 2백50근이 소요된다.

7, 시비 및 관리

가, 시비 : 반하 재배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금비(질소질비료 및 화학비료)사용을 금해야 하며 반하가 점점 적어지는 원인은 금비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퇴비 및 기타 유기질 비료에 치중해야 한다.

○기비 : 3백평(10a)당 퇴비 1천㎏ 유박 1백50㎏, 잘썩은 계분 3백㎏정도 시비하면 된다.

○추비 : 2년째 4월중 하순과 7월의 2회에 완숙퇴비 1천㎏을 나누어 시비한다.

나, 주요관리

○짚덮어주기 : 봄에 정식하거나 가을에 정식한 반하는 식재후 즉시 짚이나 건초를 덮어주고 발아후에도 짚을 걷지 말고 그대로 유지한다(짚을 너무 많이 덮지 말것).

○중경 및 제초 : 생활력이 강하지만 초장이 작기때문에 제초를 하지 않으면 생육이 나쁘므로 중경을 겸한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다, 병충해 : 야도충, 굼뱅이 등이 구근 피해를 주는 예가 있으므로 식재시 토양 살충제를 충분히 주고 뜯지 않거든 발아 후에 규라텔입제를 살포한다.

8, 수확 및 조제

○시기 : 반하는 6월중순~하순(하지)경에 수확하는 것이 괴근이 가장 굵고 충실하다. 수확은 봄에는 3월하순 가을에는 10월하순~11월 상순이다.

○조제 : 수확후 근경만 따서 깨끗이 씻어 근경 18ℓ에 모래 2ℓ의 비율로 큰 통에 넣고 소량의 물을 가해서 20분정도 막대기로 회전시켜 외피를 완전히 벗겨 건조시킨다. 수확량은 3백평(10a)당 생근 1천㎏(1천6백근) 건재 2백50(4백20근)정도이다.

※ 유의할점

○수확은 하지때 하는 것이 괴근이 가장 굵고 충실하다(겨울동해 입기쉬움).

○금비(질소질 비료 및 화학비료) 사용을 금해야 한다(금비를 사용하면 괴근이 작아지는 현상을 초래함).

○봄식재나 가을식재후 흙을 덮고 즉시 짚(건초)을 덮어주고 발아후에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둔다. 짚을 덮을때 유의할점은 짚이나 건초를 너무 많이 덮어 발아후에 잎이 짚위로 올라오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잎과 줄기가 키가 크게 자라지 않음으로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초기 김멘후에는 데브리놀이나 스텀프를 뿌려준다).

○반하는 단작보다 마늘, 생강과 혼작 재배함이 유리하다.